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후보 추천
단체 명시 등〉

■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68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제공 의무 강화	3
2.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후보 추천 단체 명시	5
3. 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 신설	10
※ 참고자료	12
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	12
2. 광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13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14
4.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15
5. 2024년 제8차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16

I. 제안경위

2024년 9월 6일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수자원, 건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이는 우리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커짐.

현행 탄소중립위원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이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구성 방식은 기후 위기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다각화하고 포괄성을 높이

는 노력이 시급함.

이에 위원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각 부처에서 NDC 감축량 산출에 사용된 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감축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자체가 NDC 감축량 산출에 활용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안 제10조, 제15조, 제17조).

III. 검토의견

1. 국가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제공 의무 강화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u>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u> 한다.	④ ----- ----- ----- ----- -- <u>제공하여야</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료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완결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환경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자료제출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유사 입법례¹⁾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대안)」(진성준의원,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각 2건)을 2024년 9월 12일 의결하였고,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에 따라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반영²⁾된 바 있음.

1)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의2(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⑥ 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단체 명시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 계층(사용자 단체, 근로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 추천 단체 등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u>한다</u> .	④ ----- ----- <u>하며, 각 이</u> <u>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u> <u>합되어야 한다.</u>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u> <u>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u> <u>이상</u>
<신설>	4. <u>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u> <u>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규모</u> <u>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u> <u>명 이상</u>
<신설>	5. <u>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u> <u>서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자 2명 이상 6. 자영업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7.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이상 ⑤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 ----- ----- ----- -----반영되도록----- -----. ⑥·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³⁾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농업계,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없고, 시민사회와 여성의 비중이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참고자료1).

[제1기 및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비교]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여성	28명	7명
농업계	1명	-
청년	6명	1명
시민사회	10명	2명
노동	1명	-
산업	12명	1명

자료: 환경부

또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노동계, 농업계, 청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역시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⁴⁾되고 있음(참고자료2).

이에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4) 해럴드경제, “늦은 출발 탄중위, 민간위원 구성 두고 시끌”, 2022.11.10.

단체(사용자단체, 근로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취지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현행 체제가 적절하고, 법률에 명시된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만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단체에게 후보 추천권이 한정될 수 있으며, 추천단체 수 증가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⁵⁾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⁶⁾, 지속가능발전위원회⁷⁾, 청년정책조정위원회⁸⁾ 등 현재 운영 중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국

5) 개정안 제15조제5항 각 호와 개정안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이 6,835개(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 비영리민간단체가 15,115개(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023년 3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추천단체가 과도하게 많아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3조(조직)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8)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경우 위촉권자가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제1기와 비교 시 청년, 노동,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위원 위촉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회의) ①·② (생략) <u><신설></u>	제1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u>

현행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인원, 상정안건 및 결정사항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⁹⁾되고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¹⁰⁾에 따라 공공기관은

9) 한국경제, “[취재수첩] 회의록 하나 안 남긴 탄소중립위”, 2022.1.2.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¹¹⁾에 따라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에 대한 내용 외에 발언요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례¹²⁾가 있어왔는바, 개정안은 회의 참석자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포함하여 정책수립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물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9.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1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4년 제4차 총괄기획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는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에 대해 공개하고 있으나, 발언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환경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참고자료5)¹³⁾하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3

13) 탄중위가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회의장소, 참석인원,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 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

□ 1기 탄중위 : 위원장(1) + 위촉직(78)

※ 중도 사퇴한 위원 포함

구 분	현황	비 고
성별비율	· 여성(28명, 35%) · 남성(51명, 65%)	·
연령분포	· 10대(1명), 20대(2명), 30대(7명), 40대(10명), 50대(40명), 60대(19명)	· 청년(19~34세) : 6명 · 평균연령 : 53세
직능별	· 전문가(44명) * 학계 22명, 공공기관 22명 · 각계 대표(35명) * 산업계 12명, 시민사회 10명, 청년 4명 종교계 4명, 지자체 3명, 노동계 1명, 농업 1명	

□ 2기 탄중위 : 위원장(1) + 위촉직(32)

구 분	현황	비 고
성별비율	· 여성(7명, 21%) · 남성(26명, 79%)	
연령분포	· 30대(2명), 40대(4명), 50대(19명), 60대(8명)	· 청년 1명(김승완 교수)
직능별	· 전문가(27명) * 학계 19명, 공공기관 6명, 로펌 2명 · 각계 대표(6명) * 중소기업(2), 시민사회(2), 지자체(1), 산업계(1)	

※ 노동계 대표는 없으나, 한국고용정보원 본부장 선임

참고 2

광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총인원	구성		민간현황							
		정부	민간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농업계	청년	산업계	시의원, 공공기관 등	기타
서울	40	10	30	13	2			5	2	공공(4)	법조인(2), 컨설팅(1), 학회(1)
부산	50	6	44	13	4			1	11	공공(13), 의원(2)	
대구	15	6	9	5				2	1	공공(1)	
인천	30	8	22	3	2				4	공공(9), 의원(1)	탄중센터(1) 의료계(1) 언론(1)
광주	50	7	43	10	2	2			12	공공(11), 의원(4)	금융(1), 의료계(1)
대전	20	6	14	6	1				1	공공(5), 의원(1)	
울산	27	3	24	1	3		1	4	4	공공(9), 의원(1)	산림조합(1)
세종	20	6	14	3	1			1		공공(7), 의원(2)	
경기	40	15	25	6	6				3	공공(5), 의원(2)	법조인(1), 언론(1) 금융(1)
강원	30	6	24	9	3		1		2	공공(8), 의원(1)	
충북	30	6	24	9	4		1		3	공공(4), 의원(1)	법조인(1), 언론(1)
충남	50	9	41	8	3			5	4	공공(16) 의원(3)	법조인(1), 금융(1)
전북	29	9	20	6	2		1		3	공공(4) 의원(3)	법조(1)
전남	40	15	25	7	3	1		4	2	공공(8)	
경북	24	7	17	4	3				5	공공(2) 의원(2)	산림기술인 (1)
경남	30	8	22	4	4		2	1	1	공공(8), 의원(1)	탄중센터(1)
제주	66	22	44	15	5		3	2	10	공공(8)	예술(1)

참고 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5.4 시행)에 근거

- (소속 및 기능)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기본법 제16조)

* 핵심 국정과제를 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 관련 기능을 수행하여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

<<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위촉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제15조 제8항)

참고 4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개요

□ 수립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계획 기간 및 주기

- 20년을 계획기간(‘23~’42)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 주요 내용(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2항]

-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 ✓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 ✓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 국제감축 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 관련 계획

- 상위계획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 하위계획 : 「국가기후위기 적응대책」, 「시·도 계획」, 「시·군·구 계획」
- 관련계획 :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중장기 행정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4년 제8차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4. 9. 30.(월) 10:00 ~ 12:00 /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1관 510호)
- (참석) 분과위원, 환경부·산업부, 탄녹위 사무처 등 24명
- (안건) ①제11차 전기본 검토의견 통보(안), ②격년투명성보고서, ③ '25년도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관리목표(안)

□ 주요 논의내용

【안건 1】 제11차 전기본 검토의견 통보(안)

- △NDC와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부대의견이 아닌 본문에 표기, △재생에너지 확대, ESS 확충, 전력망 확충 등 위원들 의견 반영 필요

【안건 2】 격년투명성보고서

- 온실가스 배출전망이 위드매저 시나리오로 우리나라 감축 의지 등 고려하여 추가적인 설명 기재 필요
- 격년투명성보고서에 대한 전체 분과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 필요(~10.11)

【안건 3】 '25년도 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관리목표(안)

- 배출허용량이 기준연도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허용량을 기준연도 배출량 수준으로 조정 필요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배출권거래제와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함